##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경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127 발의연월일: 2021. 5. 14.

발 의 자:유경준・윤희숙・추경호

김용판 · 김태호 · 이 용

김희국 · 강기윤 · 서일준

신원식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다른 자산의 양도 소득과의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2022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의 양도·대여 등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토록 할 예정임.

하지만 현재까지 가상자산을 다른 자산처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나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있고, 특히 가상자산의 하나인 암호화폐 투자자의 경우 하루에도 수십 퍼센트씩 급등락을 반복하거나 아예 투자한 암호화폐 자체가 폐지되는 등 여러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가상자산제도에 대한 운영대책을 먼저 마련한 후에 이에 대한 과세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시행일을 2022년 1월 1일에서 2024년 1월 1일로 2년간 유예함으로써 가산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를 완만하게 시행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5항, 부칙 제1조제2호,

제5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2항 및 제22조).

법률 제 호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5항 중 "2022년 1월 1일"을 "2024년 1월 1일"로,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제2호 중 "2022년 1월 1일"을 "2024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 제5조제1항 중 "2022년 1월 1일"을 "2024년 1월 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22년 1월 1일"을 "2024년 1월 1일"로 한다.

#### 부 칙

부칙 제20조제2항 중 "2022년 1월 1일"을 "2024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 제22조 중 "2022년 1월 1일"을 "2024년 1월 1일"로 한다.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
산) ① ~ ④ (생 략)	산)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제3호의 필요경비를	5
계산할 때 <u>2022년 1월 1일</u> 전	<u>2024년 1월 1일</u>
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	
산의 취득가액은 <u>2021년 12월</u>	<u>2023년 12월</u>
31일 당시의 시가와 그 가상자	<u> 31일</u>
산의 취득가액 중에서 큰 금액	
으로 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
정법률 부칙	정법률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	제1조(시행일)
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	
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	
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	
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4조제3항제8호다목(제21	2
조제1항제27호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7	

호, 제3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5항·제6항, 제64조의3제2항, 제70조제2항, 제84조제3호·제4호, 제119조제12호타목·파목, 제126조제1항제3호, 제127조제1항제6호다목, 제156조제1항제8호, 제156조제12항·제16항·제17항 및 제164조의4의 개정규정: 2022년 1월 1일

3. • 4. (생략)

제5조(가상자산 과세에 관한 적용례) ① 제14조제3항제8호다 목(제21조제1항제27호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21조제1항 제27호, 제3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5항·제6항, 제64조 의3제2항, 제70조제2항, 제84조 제3호 및 제164조의4의 개정규 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가 상자산을 양도·대여하는 분부 터 적용한다.

② 제127조제1항제6호다목의 개정규정은 <u>2022년 1월 1일</u> 이 후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분부 터 적용한다.

2024년 1월 1일
2024년 1월 1월
3. • 4. (현행과 같음)
제5조(가상자산 과세에 관한 적
용례) ①
<u>2024년 1월 1일</u>
②
_
<u>2024년 1월 1일</u>
•

제20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제20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에 관한 적용례) ① (생 략) 에 관한 적용례) ① (현행과 같 음) ② 제119조제12호타목 및 제12 (2) -----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 022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 024년 1월 1일-----을 양도·대여·인출하는 분부 터 적용한다. 제22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제22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에 관 에 대한 워천징수의 특례에 관 한 적용례) -----한 적용례) 제156조제1항제8호 나목 및 같은 조 제12항·제16 항ㆍ제17항의 개정규정은 2022

년 1월 1일-----

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가

상자산소득분부터 적용한다.